〔일련번호 : 7〕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 확인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에 따르면 시장은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 면제 대상시설을 제외하고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제1항제18호에 따르면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에 의하면 농협은행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에 따르면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서울시 교통정책과-29291, 2022.9.2.)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적발 및 확인에 대한 내용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면제대상 시설물조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통해 면제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매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매년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에 의거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시설물 조사표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29291(2022.9.2.),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3. 부과·징수 조치사항'에 의하면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면제대상 시설물조사 및 현장방문을 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어, 이전에 면제처리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매년 면제 대상으로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는 2022년 조사표 작성 시 "전년도에 부담금을 부과한 시설물"만을 조사대상 시설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 면제처리가 된 시설물은 그 시설물의 소유권 변동 등이 있지 않는 한 조사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목동 ㅇㅇ는 20xx. x. x.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당시 담당자가 △△ 명의 재산으로 판단해 2018년에 부담금 면제 처리한 이후, 2019년~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조사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처리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위 시설물은 신탁재산으로 등기부등본 상 '신탁재산'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 △△의 고유업무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임에도 2018년에 면제처리된 이후 2022년까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부과가 누락되었다.

이후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에 등기부등본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위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2023. 11. 7.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과-97050)를 거쳐 2023. 12. 4.에 2019년~2022년도분 총 56,685,130원을 부과하였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에 의거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도분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부과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또한 목동 ◎◎ 시설물도 20xx. x. x. △△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위 사례와 동일하게 신탁 재산임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처리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이 누락되었고, 2023. 11. 15.에 2019년~2022년도분 총 2,530,870원을 부과하였으나, 5년 소멸시효에 의하여 2018년도분은 부과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인 부적정 내역**

| 연번 | 처분대상 | 당사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적사항 | 비고<br>(2023년 부과금액) |
|---|---|---|---|---|---|
| 1 | ㉾㉾ | △△ | 2017.11.7.(수탁일) 기준 소유권 이전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함 (수탁재산으로 부과대상임) | 2019~2022년 면제대상 시설물 조사 누락 (면제 적정여부 미검토) | 총 부과금액 : 56,685,130원<br>- 2022년 : 16,337,720원<br>- 2021년 : 7,698,050원<br>- 2020년 : 15,889,650원<br>- 2019년 : 16,759,710원<br>※ 2018년 : 소멸시효 경과 |
| 2 | ◎◎ | △△ | 2017.6.30.(수탁일) 기준 소유권 이전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함 (수탁재산으로 부과대상임) | 2019~2022년 면제대상 시설물 조사 누락 (면제 적정여부 미검토) | 총 부과금액 : 2,530,870원<br>- 2022년 : 476,550원<br>- 2021년 : 476,550원<br>- 2020년 : 704,550원<br>- 2019년 : 873,220원<br>※ 2018년 : 소멸시효 경과 |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관련자는 면제대상 시설관리의 필요성과 지적 취지는 공감하나, 2022년 농협 누락 건은 본인이 2023년에 발견하여 후임자에 인수인계를 통해 결과적으로 부과를 하였으므로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대상 선정과정에서 '면제된 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위 시설물이 부과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된 점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므로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확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